##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39

발의연월일: 2021. 3. 12.

발 의 자:윤창현·권영세·권은희

김기현 · 양금희 · 유의동

윤한홍 • 이주환 • 전주혜

최형두 · 추경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 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신속하고 효과 적인 피해구제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는 한 편,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제34조의4까지 신설, 제38조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납품업자등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 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 법에 의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

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제5항 중 "사람"을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4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는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같은 법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로 본다.
  - ② 제34조의4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은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같은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 ③ 제3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 조"는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같은 법 "제62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4조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
	는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
	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
	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
	용 등의 자발적 해결, 납품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
	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
	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

- 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
  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피해 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

   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 법에 의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자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공정거 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 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

<신 설>

<신 설>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 에 관한 법률」의 준용)① ~ ④ (생 략)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
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
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
한 법설을 제10호제2성 롯 제0
<u>항을 준용한다.</u>
네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생 략)
5
, , ,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이행관리 업
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
<u>람</u>